



50여년 만 저작권 전면개정 추진

# 권리자 의견만 반영 보완 요구 높아 '난항'

the Copyright act

copyright holder

앞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저작권 인격권이 부여되고, 즐겨 보는 만화에는 대여권이 부여되는 등 저작권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저작권 권리장전'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길게는 1957년 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짧게는 1986년 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 권경희 기자



**유** 해 초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와중에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겹쳐 이와 관련한 논쟁이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정청래·윤원호 의원(이상 열린우리당)이 저작권법 전문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하지만 전문개정 초안이 공개되면서 저작권법 전문개정 작업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전문개정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는 비교적 잠잠했던 여론이 지난달 8일 1차 공청회를 계기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발의'라는 개정 목표에 대해 '날치기식 입법'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저작권법 전문개정 공청회 개최

지난달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광철·윤원호·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 의원들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환경이 변화했으나 저작권법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음원재생매체(MP3플레이어)에 대한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의무화'와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명확한 한계 설정'이 주가 됐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준비한 초안을 가지고 진행됐다.

배포된 초안에는 2월 중순 공개된 ▲인쇄도서에 대한 영리목적의 대여권 신설 ▲친고죄의 조건부 폐지 ▲실연자 인격권·대여권·공연권·배포권 신설 등 주요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이 가운데 최대 쟁점은 '대여권 신설' 조항. 도서 대여로 저작재산권자의 합법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영세한 도서 대여점 업주들이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했다.

실제로 이광철 의원 등의 홈페이지에는 대여권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고 공청회에서도 김종범 우리만화연대 사무국장과 주재국 전국만화방대여점연합회 부회장이 세부토론을 통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영리 목적의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권리자 고소 없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도를 넘은 저작권 침해행위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는 권리자 주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는 사용자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 인격권·대여권 등 변화된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작곡가나 연출자 외에 가수나 배우 등 실연자들이 인격권을 새로 부여받고, 판매용 음반과 도서에 대한 대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해 자기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과 자신이 실연한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을 보유하게 된다. 즉, 실연자는 자신이 부른 노래나 행한 연기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법률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우선 실연자의 인격권에 대해 청각 실연자의 인격권 인정은 세계실연음반조약(WPPT)도 인정하고 있지만 시청각 실연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최정환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청각실연자에게 인격권 인정이 타당하지만 이것을 시청각 실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손계성 한국방송협회 기획조사부장은 "방송에서 연기의 경우 동일성 유지권 등을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 개정안 놓고 '논란'

판매용 음반과 만화 등 도서 대여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 및 저자(도서)에게 배타적 대여권을 부여한 것도 논란이 많았다. 개정법에 따르면 만화방처럼 도서를 대여하는 사업자들은 도서 구입 외에 대여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는 자칫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만화방대여점협회 주재국 부회장은 "현실적으로 만화방이 최 대매출처인 만화업계의 현실에서 만화방에 대여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만화산업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만화연대 김종범 기획국장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여 가능한 저작물과 판매전용 저작물을 구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지, 만화가들이 대여 수익을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비디오 도서 대여업 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수만권의 만화 중 만화방의 수익에 기여하는 만화는 불과 200여개에 불과하며 대여권 인정은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개정이 의원입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나치게 행정부에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계성 부장은 "개정안 65조와 106조 등 각종 저작권법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문화부 장관이 조정하게 돼 있는데, 이는 권리자와 이용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부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문화부 장관에 대한 권한 위임 이유는 행정력의 낭비인데, 지난 86년 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소송 1번에 조정 4번이 전부일 만큼 과도한 행정력 낭비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 ‘불충분한 여론 수렴’ 제기

개정안의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하는 비난 역시 높았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지난해 초부터 들려왔지만 첫 공청회에서 초안이 완전 공개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공유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십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전문개정안을 토론자들에게조차 공청회 하루 전날 전달한 것만 보더라도 전문개정안 입법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부가 준비해 온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함으로써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고 최단기간에 처리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대학도서관 저작권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은 복제·전송 권리를 ‘도서관 안’으로 한정지어 캠퍼스 전체를 이용하는 대학의 특성을 무시해 대학 도서관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입안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공공 도서관’에만 그치는 것 같아 문광부에 공식 문서로 개정을 제안했으나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같은 대학도서관 저작권공동대책위의 다른 관계자는 “도대체 누구 얘길 듣고 개정안을 만든 것이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인성을 높이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려대 안효진 법대교수는 “이게 전문(全文) 개정인가 싶을 정도로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진 것 같다”며 “외국은 1년간

관련단체의 얘기를 듣고 토론을 통해 수정을 거듭해 나가는데, 저작권법의 경우 관련단체가 특히 많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 박익환 법대교수(변호사)는 “지금까지 현행법으로도 권리자가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를 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다만 승소를 하고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개인이거나 영세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권리자를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저작물에 대해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에 대한 고민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변리사)는 “저작권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방안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며 “저작권자의 권리만 강화한 개정안이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공연, 방송에는 제한규정을 두고 비영리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송, 공중송신은 비영리적 이용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며 “권리자들은 산업적으로 자본이 있어 손해를 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으나 개별 이용자들은 목소리가 작아 힘이 없는데 이용자들을 대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을 ‘비밀’인 것처럼 안 가르쳐주다 정부입법에서 의원입법으로 넘어가 개정안이 나왔다”며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는 만큼 4월 발의를 늦추고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개정을 추진중인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4월 발의 목표를 밝힌 것은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일 뿐 합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없다”며 “차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멀다는 인식을 했으며 시간을 두고 이용자와 권리자 모두를 설득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단체가 적절한 유권해석과 함께 수정 대안을





제시하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사안별 공청회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에도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광철 의원 등이 이처럼 발빠르게 개정안 수정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제 앞으로의 개정 작업은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저작권법 개정안 행정부 권한 지나치게 강화”

이밖에 새로 신설된 ‘공중송신권’ 관련 “‘불특정다수인’을 말하며,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고 규정된 ‘공중’이라는 용어가 이미 일본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며 사용한 용어와 개념을 그대로 도입했다”며 “다른 표현도 많은데 하필 일본의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이유는 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보여주듯 국회도서관 대강당 300여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는데,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청객으로 공청회를 찾은 대학생 심모(21)씨는 “정청래 의원이 인사말에서 ‘문화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문화 향유자들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며 ‘음악이 없는 홈페이지는 향기없는 꽃’이라고 말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니 이용자에 대한 권리 보장 내용은 없는 것 같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비영리적 목적은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하는 것이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한 소설가는 “포털 사이트 ‘다음’에는 8만여개의 소설관련 카페가 있고, 이중 5,000여개가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카페당 회원수가 100명이라고 치면 50만명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해 공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윤곽 드러난 저작권법 초안

이처럼 강력한 비난을 받고 있는 저작권법의 초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1년여의 준비 끝에 마침내 윤곽이 드러난 이 초

안에는 ‘친고죄 폐지’나 ‘실연자 인격권보장’ 등 저작권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그동안 논란을 불러왔던 P2P에서의 저작물 전송행위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사적복제범위제한’ 조항도 추가됐다.

이 초안은 정부 주도로 완성됐지만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최근 계획을 바꿔 이 안을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넘김으로써 입법은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친고죄 조건부 폐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친고죄’ 조항의 폐지다. 친고죄 조항은 당초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인터넷상에서의 저작물 공유 행위가 도를 넘어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에 폐지가 결정됐다. 저작권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의 반영인 셈이다. 다만 친고죄 조항의 전면 폐지가 콘텐츠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만 ‘친고죄’ 개념을 삭제토록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 모법인 저작권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되면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법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공청회 등을 거치며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공중송신권 신설** 공중송신은 방송과 전송, 웹캐스팅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다. 현행 저작권법이 방송과 전송만을 정의하고 있어 웹캐스팅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용방법에 관리적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최상위 개념이다.

공중송신권과 더불어 ‘디지털음성송신’도 신설됐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 발의에 의해 개시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방식의 음성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고 규정돼있다. 소위 웹캐스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과 유사하지만 기술적으로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대여권 신설 및 정비** 대여권은 이번 공청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개정안 초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된 도서를 대여하는 자는 문화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여권, 특히 만화계에서 대여권 도입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핫이슈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만화가들은 “보상을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여할지 안할지 여부를 만화가들이 갖는 배타적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복제 범위 제한** ‘사적복제 범위 제한’도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비영리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 저작권법 때문에 P2P 공간에서 MP3나 영화 등을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내려받는 행위만으



로는 처벌하기가 힘들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용자의 사적복제권을 보장한 저작권법 제27조에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P2P에서 공유되는 저작물들이 대부분 저작권자 허락 없이 배포된 것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사실상 P2P에서 저작물을 내려 받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파괴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실연자 인격권 보장** 실연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앞으로는 앨범 재킷에 연주자나 가수 등 실연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하며 남이 연주하거나 노래한 곡을 마음대로 편곡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한 것, 실연자의 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한 것, 실연자에게 배포권을 주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실연자 인격권 보장'은 이미 제정돼 발표된 '실연자·음반제작자에 전송권 부여' 조항과 함께 세계실연음반조약(WPPT)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미통상회의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됐던 부분이다.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도 상호주의하에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문화부장관이 보상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최근 국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해외 방송출연이 늘어나면서 해외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 불필요한 외국과의 분쟁방지를 위해 상호주의하에서 서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해 보상금을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협의조정이 무척 어렵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다른 보상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문화부 장관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했다.

권리자에게 주고 대어될 때마다 일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저작권법은 대여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음악 분야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노래방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사용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다른 분야 저작권자들은 대여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여점들의 반발을 우려, 대여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보급이 이뤄지고 최근 국회에서 만화 등 도서에까지 대여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영상물과 게임 등 주요 문화콘텐츠의 대여권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영상물은 '시기상조'** 현행 저작권법은 영상물 분야의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여로 인한 저작물의 광범위한 복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영상 저작권자들도 대여권 행사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비디오 대여점 및 비디오방이 위축돼 산업기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여권에 대해 미온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셀스루 시장이 대세인 외국과 달리 대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여건상 저작권자의 대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임은 거의 '포기' 상태** 게임 분야에서는 주로 PC방 분야에서 대여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제작업체들은 PC방에 대한 대여권 권한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PC방이 막대한 바잉파워를 가진 상황에서 설 불리 권한을 행사할 경우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게임업체들은 PC방이 게임을 구입해 고객에 대어하는 행위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국내 게임환경의 주류가 PC 게임에서 온라인게임으로 넘어가는 추세라 굳이 대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대여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일부 외국계 비디오게임 업체의 경우는 사용료 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대여 대신 소비자 판매만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분야에서 대여권은 앞으로 게임업체들의 제기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폭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도서는 논란중** 현재 국회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도서 대여권은 해외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출판계는 대여가 주류를 이루는 국내 시장구조에서는 창작자의 이익이 대여점으로 돌아가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대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대여권에 대한 생소한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 게 도서 대여권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외국에도 책에 대한 대여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없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



**문제로 떠오른 대여권**



콘텐츠 분야 최대 수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대여권(貸與權) 문제가 왜 문제되나.

대여권이란 저작재산권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어하는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논란은 있겠지만 대여권을 도입하면 사용료 징수를 통해 창작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여업자와 저작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화작가·DVD업계는 ‘찬성’** 만화 작가들은 대여권 도입을 반기고 있다. 만화 ‘폴 하우스’로 유명한 원수연 작가는 “대여점 시장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작가는 만화 대여 과정에서 저작권 박탈의 허탈함과 상실감을 크게 느껴왔다”고 말했다. 돈 보다 권리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만화 작가들은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대여권 제도가 도입되길 바라고 있다.

DVD업계도 저작권법 개정을 반기는 입장이다. 불법 DVD 단속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는 영리 목적의 불법 DVD가 있어도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고소가 가능하다. 일종의 친고죄인 셈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 4월 발의 어려울 듯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 의원은 지난달 8일 열린 공청회 외 후속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무리한 후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개정안에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전문개정안은 추가 수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청중은 “여러가지 의견과 현안을 반영해 개정안을 보완해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들 세 의원이 꾸준히 추진해 오던 저작권법 제 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주최측은 이를 “이 문제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4월 제출되면 그 때 다루자”는 의원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조항까지 포함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 초안은 저작권 보호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문화부는 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한 후 강력한 정책 활동을 펼쳐 올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실연자·음반제작자에 전송권 부여’ 조항 발효를 앞두고 인터넷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것처럼 이번 전면 개정도 네티즌들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저작권 보호의 정당성을 어떻게 알리나갈지가 관건이다. ●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올해부터 강화된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홈페이지( <http://www.mct.go.kr>)를 통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하고 저작권법 홍보에 직접 나섰다. 이 문서는 문답 형식을 빌어 보호대상, 권리 제한, 침해 책임 등을 50개 사례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저작물이 되는가** 단순한 감탄문이나 욕설의 연속, 단문, 흔한 게시물이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이 없어도 저작물이 된다. 법원은 이미 초등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차량정보 등 객관적 자료도 저작물이 되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해 내용에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 사용법, 병역특례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은**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거나 확성기를 통해 들려주는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하다.

◇**저작물 등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는**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다.

◇**가사를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다.

◇**타인의 글을 퍼올 경우 적절한 이용방법은**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해야 면책된다.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이어야 ‘인용’으로 인정받는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는가** 그렇지 않다.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진다.